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성 KPMG TAX 6 본부

2 Aug 2021

##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정부는 2020.07.26.에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이전가격, 국제조세 및 관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el: 02-2112-7939)

## 1.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 주요 개정사항 요약

#### (1) 이전가격

-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 이전가격세제 적용 합리화 :**
  - ①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거래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 ② 무형자산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 분담약정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경정 시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개정됩니다.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가능기한에 '기한 후 신고기한'이 추가되도록 개정됩니다.
-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 과태료 부과 전 국제거래자료(통합, 개별, 국가별보고서 등)를 수정 제출 기한 후 제출 시 과태료가 감경되도록 개정됩니다

## (2) 국제조세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었습니다.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제출의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관련 거래내역 보관 및 거래명세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CFC 규정 강화** : ① 특정외국법인 세부담률 판정기준이 기존 15% →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이하'(17.5%)로 조정, ② 특정외국법인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이 추가됩니다.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강화** :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 처분내역 이외에 '보유내역'이 자료제출의무 대상에 추가됩니다.
-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납세액공제 개선** :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 소득 지급 시 국내세율 적용 세액에서 외납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원천징수 하도록 개정됩니다.
-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특례 요건 명확화** :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을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요건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됩니다.
-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자료 제출기한 연장** :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제출 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로 개정됩니다.
- **소득대비 과다이자 조정소득금액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 :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하며, 이자율이 동일한 차입금의 경우 최근 차입일 우선,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 차입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개정됩니다.
- **과소자본세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 금융, 비금융 겸영사업자의 업종별 배수 계산 시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한 업종의 영업이익 미발생 시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개정됩니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각 개정안에 대한 현행/개정안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국조령 §15⑦)

신설)

현 행	개 정 안
<p>□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p> <p>*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p> <p>○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p> <p>○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p> <p>○ (좌 동)</p> <p>○ (좌 동)</p> <p>○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p>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  
**(국조법 §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및 경정</p> <p>* 제3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부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p> <p>○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부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원가 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과 차이가 날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기준으로 결정·경정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input type="checkbox"/>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결정·경정의 예외를 인정</p> <p>○ (좌 등)</p> <p>- 단,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부담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p>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 (국조법 §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p> <p>○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하여 다음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경정청구 가능</p> <p>- 과세표준 확정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기준에 의한 과세 조정가능 기한 명확화</p> <p>○ (좌 등)</p> <p>- (좌 등)</p> <p>- 기한 후 신고기한</p>

<개정이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한 명확화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국조령 §100)**

현 행	개 정 안																										
<p>□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p> <p>○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p> <p>○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대상자료</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td> <td>보고서별 3,000만원</td> </tr> <tr> <td>국제거래명세서</td> <td>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p>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p>□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p> <p>○ (좌 동)</p> <p>○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제출 시 <b>30~90% 과태료 감경</b>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p> <p>-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수정 제출한 시점</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과태료 감경률</th> </tr> </thead> <tbody> <tr> <td>6월 이내</td> <td>90%</td> </tr> <tr> <td>6월 초과 1년 이내</td> <td>70%</td> </tr> <tr> <td>1년 초과 2년 이내</td> <td>50%</td> </tr> <tr> <td>2년 초과 4년 이내</td> <td>30%</td> </tr> </tbody> </table> <p>- 기한 후 제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기한 후 제출시점</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과태료 감경률</th> </tr> </thead> <tbody> <tr> <td>1월 이내</td> <td>90%</td> </tr> <tr> <td>1월 초과 6월 이내</td> <td>70%</td> </tr> <tr> <td>6월 초과 1년 이내</td> <td>50%</td> </tr> <tr> <td>1년 초과 2년 이내</td> <td>30%</td> </tr> </tbody> </table>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률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률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률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률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 의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li> <li>○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li> </ul>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부가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li> <li>○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등)</li> <li>○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li> <li>○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 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li> </ul> </li> </ul>

<개정이유>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세부담률 판정기준  <input type="checkbox"/>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b>15% 이하</b>	<input type="checkbox"/>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input type="checkbox"/> 15% 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b>70% 이하</b>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나.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 (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 법인"에 한해 적용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등	<input type="checkbox"/>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법인과세 신탁*을 특정외국 법인의 범위에 추가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국조법 §58①, 국조령 §98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p> <p>○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제출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취득시</td> <td>취득내역</td> </tr> <tr> <td>투자·운용(임대)시</td> <td>투자·운용내역</td> </tr> <tr> <td>처분시</td> <td>처분내역</td> </tr> </tbody> </table> <p>&lt;추가&gt;</p> <p>○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취득시 미제출</td> <td>취득가액의 10%</td> </tr> <tr> <td>운용(임대)소득 미제출</td> <td>운용(임대)소득의 10%</td> </tr> <tr> <td>처분시 미제출</td> <td>처분가액의 10%</td> </tr> </tbody> </table> <p>&lt;추가&gt;</p> <p>※ 과태료 한도: 1억원</p>	구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p><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p> <p>○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제출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취득시</td> <td>취득내역</td> </tr> <tr> <td>투자·운용(임대)시</td> <td>투자·운용내역</td> </tr> <tr> <td>처분시</td> <td>처분내역</td> </tr> <tr> <td>보유시</td> <td>보유내역</td> </tr> </tbody> </table> <p>○ 보유내역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취득시 미제출</td> <td>취득가액의 10%</td> </tr> <tr> <td>운용(임대)소득 미제출</td> <td>운용(임대)소득의 10%</td> </tr> <tr> <td>처분시 미제출</td> <td>처분가액의 10%</td> </tr> <tr> <td>보유시 미제출</td> <td>취득가액의 10%</td> </tr> </tbody> </table> <p>※ 과태료 한도: 1억원</p>	구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보유시	보유내역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구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구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보유시	보유내역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개정이유>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의무) '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소득법 §129④, 법인법 §57①·§73①·§57의2)

현 행	개 정 안
<p>□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p> <p>○ (간접투자회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li> <li>-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세액 = 법인세액 - 외국납부세액 (국외투자소득 × 14% 한도)</li> <li>* '납부세액 &lt; 0'인 경우 환급 가능</li> </ul> <p>○ (투자신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원자조합 등</li> <li>- 결산시점에 외국납부세액 (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환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외납세액공제 시기 조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① 개인투자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소득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li> <li>▪ (대상소득)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li> </ul> <p>② 법인투자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li> <li>- (투자신탁 이익 외) 투자자의 외납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납세액을 포함</li> </ul>

<개정이유> 절차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간접투자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시기와 동일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소득법

§119의2①, 법인법 §93의2①)

현 행	개 정 안
<p>□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간주 특례</p> <p>○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p> <p>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p> <p>㉡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p> <p>②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p> <p>③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p> <p>-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p>	<p>□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p> <p>○ (좌 등)</p> <p>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p> <p>㉡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p> <p>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p> <p>㉠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p> <p>㉡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p> <p>③ (좌 등)</p>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법인령 §130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 기한 이내	<input type="checkbox"/> 자료 제출 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b>6개월 이내</b>

<개정이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행정부담 완화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시기 연장(국제 조세조정법 개정, '20.12월)에 맞추어 연장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

소득대비 과다이자지급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 (국조령

§54③)

현 행	개 정 안
<p>□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p> <p>*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p> <p>○ 조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 순이자비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손금불산입 순서</p> <p>-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손금불산입 규정 명확화</p> <p>○ (좌 등)</p> <p>- 단,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p> <p>○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 불산입 순서 명확화</p> <p>- (좌 등)</p> <p>-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 우선</p> <p>-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p>

<개정이유>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국조령 §50)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p> <p>*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p> <p>○ (업종별 배수) 금융업: 6배, 비금융업: 2배</p> <p>-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 (① 또는 ②)</p> <p>- ①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p> <p>- ②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p> <p>* 법인세법 시행령§94②2호(국외원천 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p>	<p><input type="checkbox"/>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 명확화</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p>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차입금 배분기준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관세

### 주요 개정사항 요약

-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 수입물품에 대하여 허위증명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는 경우 '보정기간' 중에도 가산세(부족세액 40%)를 부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관세납부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의 관세 과세가격결정방법 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심사결과통보일까지의 기간) 중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잠정가격신고 없이도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동 기간 중 납세자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관세납부액 확정이 불가능한 현실을 관세법상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중요사항 법령화** : AEO혜택정지 사유 명문화 및 공인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AEO지위유지를 위한 자율준수 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악의적으로 관세자료제출을 회피하려는 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세 포탈 등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제출 대신 일회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려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간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관세법 §38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 시 가산세 미부과  <신 설>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허위증명 등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족세액의 40%) 징수  * 이종계약서 등 허위증명, 거래 조작·은폐 등

<개정이유> 보정제도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42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산세(부족세액의 10%) 감면  <input type="radio"/>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 시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input type="radio"/> (좌 등)  - 사전심사 신청 전 →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

<개정이유> 자발적 세액오류 시정 유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정지 법령화(관세법 §255의2③)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인의 혜택 <input type="checkbox"/>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혜택정지 근거 마련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 (사유) 자율평가 미제출, 변동사항 보고 의무 불이행 등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사유 법령화 (관세법 §255의2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인의 취소 사유 ① 안전관리 기준 불충족 ② 거짓으로 공인심사 요청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취소사유 명확화 ① (좌 등)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받은 경우 ③ 공인기준 준수 관련 개선 또는 시정요구 불이행 ④ 분할·합병 등으로 공인한 업체의 동일성 상실 ⑤ 혜택적용 정지 처분 5회 이상 ⑥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법 §277)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 대한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li> <li>○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신설</li> <li>○ (좌 등)</li> <li>○ 현행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시정 요구 가능(30일내 이행)</li> <li>- 미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b>최대 2억원 과태료 추가 부과</b></li> <li>* 1억원 + 2억원(총 최대 3억원)</li> </ul>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최초 자료제출 요청 분부터 적용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